

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

2013년 인문학대중화사업

# 2013년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(인문주간포함) FAQ

## 1. 2013년 올해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데, 이 과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13년 시민인문강좌(인문주간)지원은 교육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인 연3과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## 2. 예술체육학 분야 전공을 한 대학교원입니다. 인문학 분야가 아닌데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동 사업은 연구책임자의 전공학문 분야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.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추진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전공평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.

## 3. 과제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(교육청 등)와의 연계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? 대응자금도 꼭 투입되어야 하나요?

- 지방자치단체,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권장하는 것은 인문학의 확산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2013년 동 사업의 기본 방향입니다. 시민인문강좌 유형1~유형2는 연계를 권장하며, 유형3의 경우 필수 요건입니다. 대응자금은 유형3의 경우 필수 요건이며,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.

## 4. 연구책임자가 대학소속 교원일 경우 반드시 소속대학을 통해 신청해야 하나요?

- 예, 소속 대학을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. 학회 등 기타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## 5. 한 기관에서 2개 이상 복수로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일한 연구책임자(총괄책임자)로 2과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공동연구원(강사진) 또한 신청과제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. (1인 1과제 참여)

## 6. 시민인문강좌지원 신청 시 인문주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? 인문주간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지급되나요? 인문주간 비용은 연구비 항목 중 어디에 작성하나요?

- 유형1의 경우 인문주간 참여는 선택사항이며, 유형2~유형3은 인문주간에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. 인문주간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으며, 유형에 따라 과제당 지원금액 안에 포함됩니다. 유형2는 지원금액인 30백만원 이내 중 약 10백만원, 유형3은 지원금액인 100백만원 이내 중 약 30백만원이 인문주간 행사 개최 비용 기준입니다. 인문주간 비용은 연구비 항목에서 운영비 항목 중의 하나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.

## 7. 인문주간이 무엇인가요? 2013년 인문주간 주제가 ‘인문학, 세상에 희망을 전하다’인데요, 시민인문강좌 주제도 동일해야 하나요?

- 인문주간은 1년에 1주일간(13. 10.28.~11.3.)전국적으로 인문학 행사가 개최되는 기간입니다. 인문주간 참여 시민인문강좌 기관이 인문주간 기간에는 인문주간 주제에 맞는 인문학관련 강연(강좌), 토론회, 대담, 답사, 공연, 전시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. 인문주간 주제와 시민인문강좌의 주제는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

## 8. 연구책임자가 행사에서 사회를 보거나, 강의를 하는 경우 별도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?

-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. 연구책임자는 연 480만원 이내(월 40만원 이내)에서 연구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## 9. 공동연구원(강사진)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나요?

- 별도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 동 사업은 강사진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며, 강사료가 지급됩니다. 강사료는 시간당 75천원~150천원 이내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## 10. 연구업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KRI(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)에 반드시 가입하고 등록해야 하나요?

- 예, 동 사업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(강사진)으로 신청할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, 이와 함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(KRI)에 업적을 등록해야 합니다.

## 11. 기관등록은 어떻게 하나요? 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만 등록이 가능한가요?

- 기관 확인 및 연구비 중앙관리 등을 고려하여 과제 신청 전에 기관등록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 특히 대학 외부 기관(단체)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기관고유번호 등을 통해 기관 및 기관장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. 재단 정보팀(1544-6118)으로 문의하여 기관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.

## 12. 연구보조원은 몇 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연구보조원 변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- 연구보조원은 신청 과제별 2명 이내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연구보조원 변경은 변경 사유를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(산학협력단 등)으로 제출하여 소속기관의 승인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연구비 중앙관리기관은 변경사유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

## 13. 추진계획서 수립 시 공동연구원(강사진)의 최대 또는 최소인원이 정해져 있나요?

-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자율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## 14. 이 사업은 간접비가 없나요?

- 동 사업은 인문학 연구진흥에 대한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인문학 대중화 및 성과 확산, 확대를 위해 별도의 간접비 지급이 없으며, 전액 직접 경비로 지원합니다.

## 15. 과제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컨소시엄 기관과 협약이 맺어져야 하나요?

- 협약 체결은 우수한 성과 창출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제 신청 완료 전에 체결되어야 합니다.

## 16. ‘학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학술진흥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지원 대상자는 대학, 연구기관, 학술단체(이하 대학 등), 또는 연구자를 말하며, ‘연구자’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    - ‘고등교육법’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
    - ‘평생교육법’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,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
    -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
    - ‘대한민국학술원법’ 제13조 및 ‘대한민국예술원법’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
    - 국내외의 대학,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
    - 대학,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,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
    -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
- <출처> ‘학술진흥법’(법제처)

N a t i o n a l   R e s e a r c h   F o u n d a t i o n   o f   K o r e a

감사합니다